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43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0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0호, 2019. 5. 2.>	부칙 < 제7110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 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u>2019</u>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u>2020</u> 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시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액에 대한 보전비용 발생
- 대 상 :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4개소) 사용료(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기본시설 사용료)

※ 4개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3개소(서부, 중부, 남부), 도심권50플러스센터

- 감면률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예상비용 : 20백만원('20.1~12월)
- 산출내역 : 396 백만원(시설 4개소 수강료, 대관료 연간 평균장수액) × 5% = 20백만원
- ※ '제로페이' 사용율 100%로 가정하여 산출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류 미 경 (02-2133-7798)